

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 계약서(노무비닷컴-발주자포함)

위탁자 겸 수익자 _____(이하 '위탁자'라 함),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'수탁자'라 함), 우선수익자(제 5 조 제 1 항에 따라 추후 지정되는 자를 말하며, 이하 '우선수익자'라 함)는 다음의 "특정금전신탁계약"(이하 '신탁계약' 또는 '이 계약'이라 함)을 체결한다.

제 1 조 (신탁의 목적 및 정의)

①본건 신탁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.

- 원도급사(각 용어의 상세한 내용은 제 3 항에서 정의되며, 이하 같다)는 본건 사업에 관하여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인 바, 위탁자는 원도급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본건 사업 하도급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. 또한, 위탁자는 다시 장비업자, 자재업자 등 협력사 및 근로자(이하 포괄하여 "협력사 및 근로자")와 본건 사업 관련 계약(재하도급계약, 공급계약 내지 근로계약 등을 말하며, 이하 "약정서")을 체결하여 해당 공사를 추진 중이다.
- 원도급사와 위탁자는 1.에서 정한 각 계약들에 따른 대금의 실효적 지급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기로 합의하고, 또한 위탁자는 동 시스템에 따른 지급이 보다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수탁자와 이 신탁계약(그에 따른 신탁을 이하 "본건 신탁")을 체결하기로 하였다.
- 본건 신탁은, 위탁자가 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며, 본건 신탁의 우선수익자를 제 1 항의 협력사 및 근로자로 지정함으로써 협력사 및 근로자가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대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②제 1 항에 따라, 위탁자는 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, 수탁자가 이를 보관·관리·운용하며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에게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(이하 "신탁목적물" 또는 "신탁재산"이라 함)을 지급하기로 한다.

③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"공사도급계약"이라 함은 본건 사업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으로서 발주자와 수급인으로서 원도급사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과 그에 관련된 일체의 공사도급에 관한 계약서 또는 약정서를 총칭하며, 그에 대하여 추가, 수정, 변경된 계약을 포함한다(그 내역은 별표 3-2 양식에 따라 송부한 통지서상 하도급계약내역 참조).
- "발주자"라 함은 본건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을 말하며, 그 내역은 위 1.의 하도급계약내역에서 정한 바와 같다.
- "본건 사업"이라 함은 원도급사 및 수탁자가 체결한 금전채권신탁계약(이하 "금전채권신탁계약"이라 하며, 상세한 정의는 세부사항 제 1 조 제 3 항에 따른다)과 관련한 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건설사업을 말한다.
- "원도급사" 또는 "시공사"라 함은 본건 사업의 시공사로서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, 그 내역은 위 1.의 하도급계약내역과 같다.
- "하도급계약"이라 함은 원도급사가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사에게 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,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사이에 체결되는 일체의 하도급공사 용역(위탁)계약을 총칭하며, 그에 대하여 추가, 수정, 변경된 계약을 포함한다. 그 내역은 위 1.의 하도급계약내역에서 정한 바와 같다.
- "하도급공사대금"이라 함은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사가 원도급사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하도급공사 수행에 관한 대가 금원을 말한다. 한편, 하도급사가 하도급계약에 의거 원도급사에 대하여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이 계약 체결일 현재 또는 장래의 금전채권 및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를 "하도급공사대금채권"이라 한다.
- "하도급사"라 함은 본건 사업에 관하여 원도급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위탁자를 말한다.
- "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"이라 함은 제 1 항에서 정한 바와 같은 본건 사업 관련 하도급공사대금, 협력사 및 근로자에 대한 대금의 실효적 지급 및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, 원도급사가 도입기업으로, 하도급사가 협력기업으로 회원가입하여 운영하는 '노무비닷컴(www.nomubi.com)' 시스템을 말한다. 한편, '노무비닷컴' 시스템의 내역은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가 회원가입시 교부 받은 노무비닷컴 약관 기재와 같다.
- "전문(電文)"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에서 정한 전자적 장치 중 노무비지급 전산시스템상 지급이체 전문 등의 송수신 및 신탁거래를 위하여 수탁자와 위탁자가 별도약정한 전용망을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.

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 계약서(노무비닷컴-발주자포함)

10. “등록계좌”라 함은 본 계약의 (우선)수익권 지급을 위하여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에서 지정한 위탁자와 우선수익자 명의의 각 예금계좌를 말한다.

제 2 조 (신탁금액)

- ① 이 신탁계약의 신탁금액은 이 에스크로신탁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총합으로 한다.
- ② 이 신탁계약은 제 1 항의 금액에 대하여 수탁자가 현금을 수령하여 확인하였을 때 또는 계좌이체로 에스크로신탁계좌를 통해 입금되어 신탁원장에 입금이 기록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.
- ③ 위탁자는 제 3 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이내에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추가로 금전을 신탁할 수 있다.

제 3 조 (신탁기간)

- ① 신탁기간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터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로 한다. (신탁기간 만료시 재산교부 가능일 : _____년 _____월 _____일)
- ② 이 신탁계약의 신탁기간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.
- ③ 신탁기간 종료시까지 신탁잔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,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신탁기간 만료일로부터 최소 30 일전까지 신탁기간이 끝나는 날을 통지하여야 하고, 통지할 때에는 “위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신탁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, 신탁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신탁기간이 연장된다”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위탁자가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신탁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으로 신탁기간이 연장된다.
- ⑤ 운용방법의 변경 없이 신탁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 신탁계약은 연장된 신탁기간 동안에도 같은 효력이 있다.

제 4 조 (수익자)

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- 신탁목적물의 수익자 : 위탁자
- 신탁목적물의 우선수익자 : 우선수익자

제 5 조 (우선수익자)

- ① 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지정하기로 한다.
 1. 이 신탁계약 체결과 동시에 위탁자는 원도급사와 본건 사업 하도급대금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위탁자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상 협력기업으로 회원가입하기로 한다(원도급사는 동 시스템상 도입기업으로 회원가입함).
 2. 이 신탁계약의 당사자들은, 수탁자가 위 1 호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상 “위탁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본건 사업 협력사 및 근로자를 통보(전문 수신)받은 때”에, 해당 협력사 및 근로자가 본건 신탁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한다.
- ② 우선수익자는 제 1 항에 따라 우선수익자로 지정됨과 동시에 위탁자의 수익권에 우선하는 우선수익권을 가진다.
- ③ 우선수익자가 갖는 우선수익권의 수익범위는 위탁자와 우선수익자 사이에 체결한 약정서에 따라 위탁자가 부담하는 우선수익자에 대한 체채무, 지연이자, 손해금으로 한다. 다만, 우선수익자의 우선수익권 한도는 수탁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상 전문으로 통보받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.
- ④ 우선수익자에 대한 수익 지급은 제 7 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- ⑤ 수탁자는 제 4 항에 따라 우선수익자에게 신탁목적물을 지급한 경우 위탁자에게 지급여부 및 지급내역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(노무비닷컴)으로 통지한다.



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 계약서(노무비닷컴-발주자포함)

제 6 조 (수익자의 수익권)

-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의 우선수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권을 가진다.
- 위탁자의 수익권은 제 7 조 제 1 항에서 정한 지급순위에 따라 위탁자의 수익권보다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항목의 지급이 완료된 후 남은 신탁재산을 지급받을 권리로 한다.
- 수익자에 대한 수익 지급은 제 7 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 7 조 (수익권에 대한 지급)

- 수탁자는 신탁기간 동안 제 2 항에서 정한 매 지급일 마다 에스크로신탁계좌 입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 각 항목을 지급한다. 한편, 제 1 호 중 어느 항목의 지급이 지급일 이외의 날에 행하여져야 하는 경우, 해당 소요자금을 그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하여 두었다가 해당 지급일에 지급하기로 한다.
 - 다음 각 목에 기재된 비용을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.
 - 신탁재산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조세
 - 수탁자가 제 17 조 및 제 19 조에 따라 지급받을 신탁비용 및 신탁보수
 - 제 5 조 제 3 항 소정의 수익을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한다. 그 금액의 확정 및 지급절차는 아래 제 2 항에 따른다.
 - 제 6 조 제 2 항 소정의 수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. 그 금액의 확정 및 지급절차는 아래 제 2 항에 따른다.
-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에 따른 수익권에 대한 수익의 지급절차 및 지급금액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그 지급일은, 본건 사업 하도급 공사의 기성고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이 에스크로신탁계좌에 입금된 날 이후의 날(입금일 당일 포함)로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에 따라 우선수익자에 대한 수익 지급일로 확정된 날로 한다. 다만,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지급일로 한다.
 - 우선수익자 및 수익자에 대한 수익 지급 금액은, i) 우선수익권의 경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에 따라 확정된 금액으로 하며, ii) 수익권의 경우 제 1 항 1 호 및 2 호 금액의 지급 완료 후 남은 금액으로 한다. 그 확인을 위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, 위탁자는 이를 즉시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수탁자는 위 1 호 및 2 호에 따라 확정된 지급일에 확정된 금액을 해당 우선수익자 및 수익자에게 해당 수익으로 지급한다. 그 지급의 방식은 수탁자가 에스크로신탁계좌에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에서 지정한 예금계좌로 각 이체하는 방식에 의한다.
 - 어느 지급일에 에스크로신탁계좌 입금액이 우선수익자 전원에 대한 수익 지급에 부족한 경우, 위탁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는 전문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.
- 우선수익자가 근로자인 경우, 그 우선수익권에 대한 지급시 원천징수 업무는 위탁자가 담당하기로 한다. 위탁자는 근로자인 우선수익자에 대한 수익 지급시 원천징수 관련 사항을 위탁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처리하여야 한다.
- 수탁자가 본 조에 따라 우선수익자 및 수익자에 대한 수익을 지급하는 경우, 수탁자는 수탁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동 지급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.

제 8 조 (전자금융서비스 이용에 따른 기준)

- 제 7 조에 따른 지급은 수탁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상 지급이체 전문을 수신하여 이루어지며, 이 경우 동 전문은 수탁자의 영업일 00:30-17:30 사이에 수탁자에게 송신되어야 한다. 다만, 추후 수탁자의 상품운용방법 변경에 따라 전문 송신시간은 변경될 수 있다.
- 어느 우선수익자 또는 수익자의 등록계좌에 잔액증명발급 등으로 입금제한이 있을 때에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위탁자에게 입금제한 사실을 통지한 후, 해당 우선수익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. 다만, 위탁자 및 수탁자는 합의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.
-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상 지급이체 전문은 동 시스템에서 정한 절차 및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절차를 충족하여야 하며, 그 절차를 충족하지 못하여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수탁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다만,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약관에 위탁자와 우선수익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약관을 우선 적용한다.



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 계약서(노무비닷컴-발주자포함)

제 9 조 (계약의 체결 및 해지)

이 신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는 영업점 창구 거래로 가능하다. 한편, 금전채권신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 신탁계약의 당사자들은 합의하여 이 신탁계약을 해지(일부해지 포함)하거나 변경하기로 한다.

제 10 조 (신탁재산의 운용)

- 위탁자는 [별표 1]의 '신탁재산 운용방법' 중에서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는 금전의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[별표 2]의 특정금전신탁운용지시서에 자필로 적어 신탁재산의 운용지시하고, 수탁자는 이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인 금전을 운용한다. 다만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운용할 수 없는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 4-85 조 제 3 항에 따라 수탁자의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대여 또는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
- 수탁자는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도 위탁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한 제 1 항과 같이 처리한다.
- 수탁자는 이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·운용한다.
- 위탁자는 제 1 항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.
- 제 1 항에서 운용방법이 하나은행 정기예금으로 지정 운용 지시하는 경우에는 세부 상품으로 "수시지급식"과 "만기지급식" 중 사전 위탁자와 우선수익자가 협의한후 우선수익자의 전문을 통하여 통지하는 방식으로 수탁자는 운용한다.
- 제 2 항에서 위탁자의 별도 운용지시 및 제 4 항의 신탁재산 운용방법 변경요구는 위탁자의 전문을 통하여 수탁자에게 통지한다.

제 11 조 (운용내역 통보 등)

- 수탁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 4-93 조 제 11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 분기별 1 회 이상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을 위탁자에게 서면, 전자우편 등 다음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정기적인 통보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본 계약서에 명기한 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.

운용내역
통보방법

자택우편, 직장우편, 전자우편(E-mail), 그 밖의 전자통신(문자메세지, 스마트폰 앱 등),
통보생략(불원) 위탁자 : _____ (인)

-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및 재산의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제 12 조에 따라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.
- 위탁자가 본인의 재무상태,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상담요구에 응하여야 한다.

제 12 조 (장부·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)

-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 등으로 그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에 관련된 신탁재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·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.
 - 신탁재산 명세서
 -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
 - 신탁재산 운용내역서
-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의 제 1 항에 따른 청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수탁자가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의 제 1 항에 따른 청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뜻과 그 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에게 내주어야 한다.
 -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·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제공받은 자가 그 정보를 거래 또는 업무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것이 뚜렷하게 염려되는 경우
 -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·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
 - 신탁계약이 해지된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·서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2 조제 1 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의 열람제공 요청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



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 계약서(노무비닷컴-발주자포함)

제 13 조 (법적절차)

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소송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.

제 14 조 (원본과 이익의 보전)

이 신탁계약은 원본과 이익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.

제 15 조 (손익의 귀속 등)

신탁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 및 손실은 전부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된다.

제 16 조 (신탁재산의 표시)

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,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임을 표시한다.

제 17 조 (신탁보수)

① 신탁보수는 다음 산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약정서별로 계산한다.

$$\text{신탁보수} = \text{신탁원본 평균잔액} \times \text{연 (특약에서 정함)\%}$$

신탁원본 평균잔액이라 함은 매일의 신탁원본을 신탁기간(일수)동안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신탁기간(일수)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, 다만, 제 10 조에서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이 정기예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(우선)수익권 행사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지급하는 신탁원본을 말한다.

② 본 조에서 신탁기간(일수) 계산은 약정서별 담보금액이 입금된 날 또는 직전 신탁보수 차감일로부터 제 3 항에서 정한 신탁보수 수령일의 전일까지로 한다.

③ 수탁자는 제 1 항에 따라 계산된 신탁보수를 제 17 조에서 정한 약정서별 신탁이익 지급일에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한다.

제 18 조 (이익계산 및 지급)

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에 신탁이익을 계산하여 위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지급한다.

- 매분기말 (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)
- 신탁기간 만료일의 다음 영업일
-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이 정기예금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정기예금 만기일

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위탁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한다.

- 제 10 조에서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발행어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약정서의 신탁원본 전체에 대하여 신탁이익을 계산하여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한다.
- 제 10 조에서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정기예금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(우선)수익권 행사로 지급하는 해당 약정서별 신탁원본에 대하여 신탁이익을 계산하여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한다.
- 제 1 호 및 제 2 호 이외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.

③ 신탁이익의 계산은 에스크로신탁계좌 입금일 또는 직전 이익지급일로부터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서 정한 이익지급일의 전일까지로 한다.

제 19 조 (조세 및 비용)

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공과금,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 중에서 충당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청구한다.

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 계약서(노무비닷컴-발주자포함)

제 20 조 (중도해지)

- 제 3 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제 1 항에 따라 신탁기간 만료 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제 18 조에 따라 신탁이익을 계산하며, 수탁자는 제 17 조에서 정한 신탁보수 이외에 별도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.

제 21 조 (신탁계약의 종료사유 등)

- 이 신탁계약은 제 3 조의 신탁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종료하며, 이 경우 지급은 제 7 조에 준하여 처리한다.
- 제 1 항에 따라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승인을 얻는다.
-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위탁자와 우선수익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우선수익자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, 위탁자와 우선수익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수탁자는 제 3 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“위탁자와 우선수익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위탁자와 우선수익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.” 라는 취지의 내용을 위탁자와 우선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- 위탁자와 우선수익자는 수탁자로부터 제 3 항의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 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 3 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.
- 수탁자는 신탁재산 중 처분하여 현금화하기 곤란하거나, 위탁자와 우선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교부한다. 다만, 운용현상대로 교부가 곤란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우선수익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해질 때까지 보관, 관리 및 주심을 한다.
- 신탁재산의 만기가 신탁계약의 종료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신탁계약 종료시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기가 곤란하여 신탁목적물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,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. 또한 신탁재산의 만기가 신탁계약의 종료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.

제 22 조 (양도 및 담보제공)

위탁자, 수탁자, 우선수익자가 합의하는 경우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.

제 23 조 (일부해지)

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이 신탁계약의 일부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. 이 경우 지급은 제 7 조에 준하여 처리한다.

제 24 조 (신탁계약의 변경 등)

위탁자, 수탁자, 우선수익자가 합의하여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 25 조 (사고신고 등)

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- 발행된 증서·등록 인감 등을 분실·도난·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
- 위탁자, 대리인, 기타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성명·상호·주소·전화번호 등의 변경, 사망 또는 행위능력이 변동이 있을 때



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 계약서(노무비닷컴-발주자포함)

제 26 조 (인감신고)

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날인된 인영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·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 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·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 27 조 (특약)

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 16 조 제 1 항의 신탁보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가. 운용자산이 하나은행 정기예금(만기저금식)으로 지정한 경우
신탁보수 = 신탁원본 평균잔액 × 연 () %

나. 위 가.이외의 운용자산
신탁보수 = 신탁원본 평균잔액 × 연 () %

제 28 조 (관계법규 등 준용)

-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탁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 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.
- 이 계약의 내용 중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부분은 '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' 등 전자금융거래관련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.

제 29 조 (관할법원)

-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,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- 이 신탁계약으로 인한 소송은 「민사소송법」에 정하는 관할법원에 제기하기로 한다.

제 30 조 (신탁계약)

이 신탁계약서는 2 통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 통씩 보관하며,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별도의 신탁증서(신탁계좌)를 교부한다.

제 31 조 (개인정보의 제공·활용)

위탁자 및 우선수익자는 수탁자가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식별정보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등), 본건 사업 관련 정보 및 금융거래정보(관련 계좌번호 등 포함)에 관한 신용정보에 대하여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23 조 규정에 따라 이를 이 계약 관련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는 데 동의하며, 개인식별정보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의하여 이 계약의 작성 및 체결, 본건 사업 진행 등의 목적으로 이 계약의 체결에 관한 당사자 및 전문 인력기관(법무법인, 회계법인 등)에게 제공하고 본건 사업 종료일까지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.

제 32 조 (기타 신탁계약 세부사항)

기타 이 계약에 관하여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신탁계약 세부사항을 정하기로 한다.

(이하 본 페이지 여백)



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 계약서(노무비닷컴-발주자포함)

신탁계약 세부사항

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 계약서(이하 “신탁계약”)의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 세부사항(이하 “세부사항”)을 정하기로 한다. 본건 신탁과 관련하여 세부사항과 신탁계약의 내용이 상호 충돌되는 경우 세부사항의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.

제 1 조 (목적 및 용어의 정의)

① 하도급사로서 위탁자는 원도급사와 사이에 공사 현장마다 하도급계약을 계속적·반복적으로 체결하고 그에 따른 하도급공사를 계속적·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. 이와 관련하여, 원도급사와 위탁자는 신탁계약 제 1 조 제 1 항에서 정한 각 계약들에 따른 대금의 실효적 지급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기로 합의하고, 또한 동 시스템에 따른 지급이 보다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수탁자와 다음과 같은 각 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.

1. 먼저, 원도급사는 위와 같이 계속적·반복적으로 체결되는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, 수탁자와 금전채권신탁계약을 계속적·반복적으로 체결하여 원도급사가 각 공사 현장의 i) 발주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공사대금채권 및 ii) 공사대금입금계좌 개설은행에 대하여 보유하는 공사대금입금계좌 예금반환채권을 수탁자에게 신탁할 예정에 있으며 또한 동 신탁의 제 1 종 수익자를 본건 신탁의 위탁자로 지정함으로써 하도급사로서 본건 신탁 위탁자가 원도급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하도급공사대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도모하고자 한다.

2. 다음으로, 위탁자는 수탁자와 이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자가 위와 같이 계속적·반복적으로 체결되는 하도급계약, 금전채권신탁계약에 따라 보유하는 하도급공사대금채권 및 금전채권신탁계약 제 1 종 수익권과 그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며, 본건 신탁의 우선수익자를 제 1 항의 협력사 및 근로자로 지정함으로써 협력사 및 근로자가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대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도모하고자 한다.

3. 위 1. 및 2.에서 정한 금전채권신탁계약 및 이 신탁계약에 따른 지급은,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당사자들이 확정된 금액을, 수탁자가 동 시스템에서 확정된 지급일에 금전채권신탁계약 및 본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절차 및 방식에 따라 지급한다.

② 이 세부사항은, 위탁자가 위와 같이 계속적·반복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하도급공사대금채권과 금전채권신탁계약상 제 1 종 수익권을 추가로 수탁자에게 신탁함으로써, 신탁계약 제 1 조에서 정한 신탁계약 목적을 더욱 실효적·안정적으로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 이를 위해 제 1 조 제 3 항 제 1 호에서 정한 원도급사와 수탁자 사이에 금전채권신탁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한다.

③ 이 세부사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신탁계약에서 사용된 용어는 달리 세부사항에서 정의되지 않는 한 세부사항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.

1. “금전채권신탁계약”이라 함은 원도급사가 각 공사 현장의 i) 발주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공사대금채권 및 ii) 공사대금입금계좌 개설은행에 대하여 보유하는 공사대금입금계좌 예금반환채권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내용으로 원도급사와 수탁자가 계속적·반복적으로 체결하는 금전채권신탁거래기본약관 및 그에 대한 특약을 총칭한다. 이 신탁계약의 위탁자는 금전채권신탁계약에 따라 동 신탁의 제 1 종 수익자로 지정된다.

2. “제 1 종 수익권”이라 함은 위탁자가 금전채권신탁계약에 따라 보유하는 제 1 종 수익권을 총칭한다.

3. “신탁대상자산”이라 함은 세부사항에 따른 신탁의 목적물인 하도급공사대금채권, 제 1 종 수익권 및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를 총칭하며, 그 내역은 제 2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정한 바와 같다.

④ 위탁자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위탁자가 금전채권신탁계약상 제 1 종 수익권의 수익자로 지정됨에 동의한다. 또한 위탁자는 금전채권신탁계약서 사본을 교부받고 그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한다.

제 2 조 (신탁목적물의 추가, 변동 및 권리의 이전)

① 세부사항은 신탁계약에 부수하여 신탁대상자산을 신탁계약상 신탁목적물에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. 신탁목적물로 추가되는 신탁대상자산은 다음과 같으며, 일부 변동될 수 있다.

1. 신탁계약 제 3 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동안 위탁자가 원도급사와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에 따라, 위탁자가 원도급사에 대하여 보유하는 하도급공사대금채권

2. 신탁계약 제 3 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동안 원도급사가 수탁자와 체결하는 금전채권신탁계약(제 1 조 제 1 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위탁자를 제 1 종 수익자로 지정하는 금전채권신탁계약)에 따라, 위탁자가 보유하는 제 1 종 수익권

② 위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른 금전의 신탁에 추가하여, 세부사항에 의하여 신탁대상자산을 우선수익자 및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수탁한다. 각 신탁대상자산의 본건 신탁목적물 추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 계약서(노무비닷컴-발주자포함)

- 위탁자는 원도급사와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즉시, 수탁자에게 해당 하도급계약 및 그에 관한 금전채권신탁계약에 따라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채권, 제 1 종 수익권의 신탁(본건 신탁의 신탁목적물 추가)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기로 한다. 위 의사표시(통지서)에는 해당 하도급계약의 내역에 관한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.
- 위 1.의 의사표시와 동시에, 위탁자는 해당 신탁목적물의 채무자인 원도급사와 수탁자에 대하여 제 3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지서를 발송 내지 교부함으로써 채권 신탁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.
- 위 1. 및 2.에 따른 신탁 의사표시, 하도급계약 내역 및 대항요건 구비는 별표 3. 통지서 양식에 따르기로 한다.
- 세부사항에 따른 각 신탁대상자산의 신탁은, 해당 신탁대상자산 별로 제 2 항에 따른 절차가 완료되고 제 2 항의 통지서가 수탁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- 수탁자에게 신탁되는 신탁대상자산에는 지연배상금 등 신탁대상자산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금전수입을 모두 포함한다.
- 신탁계약(세부사항 포함)의 체결로써 수탁자에게 신탁된 신탁대상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과 신탁된 신탁대상자산에 부수하는 모든 권리는 전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되, 수탁자의 고유재산 및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되는 신탁재산을 구성한다.
- 신탁개시일 이후 신탁대상자산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회수한 금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동 회수금원을 수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-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신탁된 신탁대상자산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- 수탁자는 에스크로신탁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아니한 신탁원본과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우선수익자 및 수익자에게 신탁수익의 지급의무 및 기타 어떠한 지급의무 내지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.

제 3 조 (신탁양도의 대항요건)

- 위탁자는 원도급사와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즉시 원도급사에게 해당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의 신탁양도에 대한 확정일자부 통지서(별표 3 에 따름)를 발송 또는 교부하고 그 발송본 내지 교부본을 수탁자가 지정하는 날까지 수탁자에게 제출하기로 한다. 위탁자는 원도급사로 하여금 해당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의 신탁(본건 신탁의 목적물 추가) 이후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의 지급금을 모두 수탁자가 지정한 에스크로신탁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위탁자는 원도급사와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즉시 수탁자에게 해당 하도급계약에 관한 금전채권신탁계약에 따른 제 1 종 수익권의 신탁양도에 대한 확정일자부 통지서(별표 3 에 따름)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 1 항 내지 제 2 항에서 정한 대항요건 구비 및 유지에 하자가 있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건 신탁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 및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, 수탁자는 수탁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. 또한 하도급계약이 수탁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해지 기타 소멸하거나 그 유효기간 만료 후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, 수탁자는 수탁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.

제 4 조 (계산 및 보고)

위탁자는 수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, 신탁대상자산의 잔액 및 현황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를 해당 요청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수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수익권에 대한 지급)

세부사항상 신탁목적물의 추가에 따른 우선수익권 및 수익권에 대한 지급은, 신탁계약 제 7 조에 따른다.

제 6 조 (신탁대상자산의 내용변경)

-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한 신탁대상자산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, 즉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위탁자는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즉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일부해지)

위탁자가 본건 신탁기간 중 어느 공사 현장 관련 하도급공사대금을 신탁계약(세부사항 포함) 및 금전채권신탁계약에서 정한 방식 이외의 방법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, 위탁자는 원도급사와 합의하여 해당 신탁대상자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일부 해지하여야 한다.

본 계약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 계약서(노무비닷컴-발주자포함)

제 8 조 (신탁계약의 적용)

세부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신탁계약이 적용된다.

제 9 조 (신탁사무위임계약의 체결)

수탁자는 세부사항 제 3 조 대항요건 구비와 관련한 일부 사항을 제 3 자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신탁사무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, 자세한 업무범위 및 방법은 신탁사무위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. 한편, 본건 신탁사무위임계약과 관련한 신탁재산관리자에 대한 보수는 신탁재산으로부터 지급하기로 한다.

20 년 월 일

위탁자 겸 수익자

주 소

생년월일/사업자번호

성 명 (인)

우선수익자(신탁계약 제 5 조 제 1 항에 따라 추후 지정)

주 소

생년월일/사업자번호

성 명 (인)

수탁자

주 소

생년월일/사업자번호

성 명 (인)

본 계약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 계약서(노무비닷컴-발주자포함)

[별표 1]

신탁자금 운용방법

다음의 신탁자금운용방법(1.부터 25.까지에서 정한 방법)중에서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[별표 2]의 신탁재산 운용지시서에 직접 기재하고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대출금	6. 그 밖의 금융채	11.보증어음	16.양도성예금증서	21.그 밖의 유가증권
2. 콜론	7. 지방채	12.자유금리기업어음*	17.신용카드채권	22.부동산의 매입 및 개발
3. 환매조건부채권	8. 사채	13.표지어음	18.개발신탁수익증권	23.증권지수의 선물거래
4. 국 채	9. 주식	14.중개어음	19.공사채형수익증권	24.증권의 옵션
5. 통화안정증권	10.외화증권	15.발행어음	20.주식형 수익증권	25.그 밖에 신탁법 및 신탁업 관계법령에서 정한 방법

* 신탁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, 기업어음증권의 경우 부도발생시 해당 지분만큼 실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며, 분할 후 실물로 지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업어음증권의 권리자로서 정상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 계약서(노무비닷컴-발주자포함)

[별표 2]

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

주식회사 하나은행 _____ 지점 앞

귀사와의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운용을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.

■ 신탁 계약일 : _____

■ 계좌 번호 : _____

■ 운용지시 내용 : 신탁자금 운용방법[별표 1]중에서 세부적으로 운용지시 할 때에는 그 내용을 「세부내용」란에 직접 기재하고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신탁자금 운용방법 (별표 1) (운용대상의 종류)	세부내용	
	운용대상	
	위험도	
	운용비중	
	운용대상	자 필 기재
	위험도	
	운용비중	
	운용대상	
	위험도	
	운용비중	

_____년 ____월 ____일

위탁자 성명 : _____ (인/서명) (법정)대리인 성명 : _____ (인/서명)
주소 : _____ 주소 : _____



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 계약서(노무비닷컴-발주자포함)

[별표 3]

채권양도(신탁) 통지서

수신: 1. _____ (하도급공사대금채권 채무자 지위. 이하 "원도급사")

2. 주식회사 하나은행(금전채권신탁계약 수탁자 지위. 이하 "수탁자")

참조:

제목: 하도급공사대금채권 및 제 1 종 수익권 양도(신탁) 통지

- 하도급사로서 당사는, 원도급사와 사이에 <별첨 하도급계약 내역> 기재 계약서(이하 "하도급계약"이라 하며, 그 갱신·변경된 계약을 모두 포함합니다)를 체결하였으며, 그에 따라 원도급사에 대하여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채권(이하 "하도급공사대금채권")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
- 또한, 원도급사는 수탁자와 금전채권신탁거래기본약관 및 그에 대한 특약(이하 "금전채권신탁계약"이라 하며, 그 갱신·변경된 계약을 모두 포함합니다)을 체결하여 원도급사가 위 하도급계약 공사의 발주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공사대금채권을 수탁자에게 신탁하였는 바(각 용어의 정의는 금전채권신탁계약에 따르기로 하며, 이하 같습니다), 당사는 금전채권신탁계약의 제 1 종 수익자로 지정되었고 그에 따라 당사는 제 1 종 수익권(이하 "제 1 종 수익권")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
- 한편, 당사는 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에스크로신탁계약 수탁자의 지위에서 "하나은행")과 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 계약서(세부사항을 포함하며, 이하 총칭하여 "에스크로신탁계약")를 체결하여, 당사가 신탁기간 동안 원도급사에 대하여 보유하는 하도급공사대금채권 및 수탁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제 1 종 수익권을 하나은행에 양도(신탁)하기로 하였습니다. 당사는 위와 같이 금번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바, 그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채권과 그에 관한 금전채권신탁계약상 제 1 종 수익권을 에스크로신탁계약에 따라 하나은행에 양도(신탁)하며, 이를 귀사들에 통지합니다.
- 이에 귀사들에 대하여 본 통지서를 송부하오니, 향후 금번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채권 및 제 1 종 수익권의 지급금은 모두 양수인인 하나은행에게 직접 지급하여 주시기 바라며, 하나은행으로부터 위 지급금의 지급 방법에 대한 별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.

20 년 월 일

통지인:

주식회사 []

주소:

대표이사 (인)

[확정일자]

별첨

하도급계약 내역

- 건설사업 명칭:
- 발주자:
- 시공사(원도급사):
- 하도급사:
- 하도급계약 체결일 및 명칭: 20 년 월 일자 []계약서
- 하도급 공사기간:
- 하도급 공사대금 금액: